

의정활동보고서

제186회 임시회(2004. 2. 4~2. 12)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186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꼭 이루어 지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국내 경제가 호전되어 청년실업이 해소되고 정치가 안정된 평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바리면서 우리 도정에도 여러 분야에 걸쳐서 눈부신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년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적으로는 4월달에 총선이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하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게 됩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금년의 도정에 관한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서는 도정 업무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시어 금년 의정활동의 기초로 삼아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도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설에 이어 며칠간의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입춘에 접어들었습니다.

다가오는 새봄을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고,

이번 회기에서도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2. 4

경상북도의회의장 **崔 圓 炳**

차 례

I. 개 황	
II. 의사 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위원회	
III.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위원회	
IV. 민원 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2. 기타사항

VI. 5분자유(신상)발언

부 록

조 례 안

동 의 안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86회 임시회는 2004년 2월 4일 개최하여 2월 12일까지 9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11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2월 4일(수)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자유발언(박종욱, 박승학의원)과 신상발언(박성만 의원)을 청취한 후 제186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도정에관한 보고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 등을 의결하고 휴회하였다.

회기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월 25부터 2월 11일까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04년도 업무보고와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유보하는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2월 12일(목)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경상북도양곡가공업등록및신고철차등 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상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 한 후 제18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 일정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임시회

나. 소집 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라. 집회공고일 : 2004. 1. 20

마. 집 회 일 : 2004. 2. 4(수) 11:00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4. 2. 4 ~ 2. 12(9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44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 획	행정 사회	교육 환경	농수산	산업 관광	건설 소방	특별
금회	11	1	1	2	2	2	1	2	
누계	205	21	22	29	32	23	24	23	31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 2. 11(수)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7회임시회회기협의의견 ○ 2004년도의회사무처소관 업무보고 	제 1 차 원안가결

<기획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 2. 9(월)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 차 원안가결

<행정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 2. 10(화)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연수원, 자치행정국 소관 	제 1 차
2. 11(수)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도대학,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 2 차 유 보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 2. 9(월)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 업무보고 - 보건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보건환경연구원 	제 1 차
2. 10(화)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 업무보고 - 도교육청(직속기관, 시군교육청 포함)소관 ○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2 차 원안가결 "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 2. 10(화)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 업무보고 - 농수산국 소관 ○ 2004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경상북도양곡가공업등록및신고절차등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제 1 차 원안가결 "
2. 11(수)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 업무보고 - 농업기술원 소관 	제 2 차

<산업관광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 2. 11(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통상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경상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 및지원에 관한조례안 	제 1 차 원안가결 유 보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 2. 9(월)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도시국 소관 	제 1 차
2. 10(화)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본부 소관 	제 2 차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의	심 의 · 의 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6 (171)	6 (170)	6 (154)	(15)	(1)		(1)	
조 례 안	소 계	5 (73)	5 (73)	5 (69)	(3)	(1)		
	의 회 제 안	(6)	(6)	(4)	(1)	(1)		
	도지사 제 출	3 (53)	3 (53)	3 (51)	(2)			
	교육감 제 출	2 (14)	2 (14)	2 (14)				
예 산 · 결 산	(17)	(17)	(8)	(9)				
동 의 · 승 인	1 (47)	1 (47)	1 (46)	(1)				
건 의 안	(7)	(7)	(6)	(1)				
결 의 안	(8)	(8)	(8)					
기 타 안	(19)	(18)	(17)	(1)			(1)	유보1

※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8 (175)	6 (170)	5 (73)	(17)	1 (47)	(7)	(8)	(18)			2 (5)
의회운영	(5)	(5)	(4)				(1)				
기 획	1 (16)	1 (15)	1 (8)		(5)	(1)		(1)			(1)
행정사회	1 (47)	(45)	(28)		(15)	(1)	(1)				1 (2)
교육환경	2 (23)	2 (23)	2 (17)		(5)			(1)			
농 수 산	2 (12)	2 (12)	1 (4)		1 (7)	(1)					
산업관광	2 (23)	1 (22)	1 (10)		(11)		(1)				1 (1)
건설소방	(9)	(9)	(2)		(4)	(2)		(1)			
특 별	(17)	(17)		(17)							
본회의	(23)	(22)				(2)	(5)	(15)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3 (65)	(5)	(8)	(9)	1 (11)	(5)	(3)	(6)	2 (7)	(11)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8)	(4)	(2)	(1)	1 (1)					
교육환경	(11)			(1)		(5)		(5)		
농 수 산	1 (7)			(1)	(1)				1 (5)	
산업관광	(14)		(6)	(1)			(3)			(4)
건설소방	1 (21)	(1)		(5)	(10)			(1)	1 (2)	(2)
특별위원회	(3)									(3)

※ ()안은 제7대 의원 누계

나. 처 리

위원회별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2 (64)	2 (64)				2 (2)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7)	(7)				1 (1)
교육환경	(11)	(11)				
농 수 산	1 (7)	1 (7)				
산업관광	(14)	(14)				
건설소방	1 (20)	1 (20)				1 (1)
특별위원회	(3)	(3)				

※ ()안은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비 고
경상북도지사 (2004. 1. 27)	경상북도고문번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기 획 (2004. 1. 28)
경상북도지사 (2004. 1. 27)	2004년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농 수 산 (2004. 1. 28)
경상북도지사 (2004. 1. 27)	경상북도양곡가공업등록및신고절차등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농 수 산 (2004. 1. 28)
경상북도지사 (2004. 1. 27)	경상북도자동차관리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산업관광 (2004. 1. 28)
경상북도지사 (2004. 1. 27)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 및지원에관한조례안	산업관광 (2004. 1. 28)

2. 기타 사항

○ 행정자치부장관 방문

- 일 시 : 2004. 1. 17(토) 10:4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최원병 의장, 김선종·정무응 부위원장, 손규삼 의회운영위원장
각 상임위원장

○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회의

- 일 시 : 2004. 1. 27(화) 14: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나종택 예결특위 위원장, 김정자 의원

- 재향군인회 정기총회
 - 일 시 : 2004. 1. 27(화) 10:00
 - 장 소 : 성주 군민회관
 - 참 석 : 방대선 위원장(축사)
-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 제정운동 보고대회
 - 일 시 : 2004. 1. 28(수) 16:30
 - 장 소 : 경북대학교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 일 시 : 2004. 1. 28(수) 11:00
 - 장 소 : 충남도의회
 - 참 석 : 손규삼 의회운영위원장
- 자원봉사센터 근무요원 채용면접
 - 기 간 : 2004. 1. 28(수) 14:00
 - 대 상 : 도의회 의정연구실
 - 참 석 : 이현준 의원
-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세미나
 - 일 시 : 2004. 1. 29(목) 13:00
 - 장 소 : 안동 청소년수련관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 우성호 의원
- 국가균형발전시대 개막식
 - 일 시 : 2004. 1. 29(목) 10:00
 - 장 소 : 정부 대전청사
 - 참 석 : 최원병 의장
-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 일 시 : 2004. 1. 29(목) 13:30
 - 장 소 : 대전시의회 회의실
 - 참 석 : 최원병 의장

VI. 5분 자유(신상)발언

□ 제1차 본회의

박종욱 의원(교육환경위원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3년을 겪어보고 2004년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 또 소방본부장도 부임 하였고, 제가 119구조대 운영 및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행정이 날로 주민과 친숙해진 가운데서도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119구조대, 특히 농어촌에 또 빈민층, 독거노인들, 거동불능자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119구조대가 다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농어촌에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119구조대인데 실질적으로 119구조대가 설치가 되고 차량도 파견이 돼 있습니다마는 특히 북부지역 쪽에 의성이나 풍산, 영덕, 청송, 영양 등 농어촌지역에는 구급차는 와 있는데 구조대가 없습니다. 2003년을 그냥 지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분만 있고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적어도 119구조대가 파출소에 설치되면 7명~11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대기소에는 4~5명이 필요하다는 현재 저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보충되지 않아서 2002년, 2003년을 그냥 지났습니다. 지금 거의 다가 파출소나 대기소에 구조차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알기로는 영양 수비 같은 데는 대기소는 있습니다마는 대기소에 차량이 대기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 파출소에 아직도 차량이 있습니다. 억지로 해서 금년에 이제 부지가 물색이 됐고 금년에 신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또한 구급차는 24시간 대기입니다. 여기에 교대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또한 구급차가 군 단위에는 탑차이고 그다음에 파출소 단위는 봉고차입니다. 이 차량 제작이 원래 제작회사에서 제작이 될 때 탑차가 없어 나오고 봉고차가 구급차로써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꺼내서 탑 올리고 그다음에 일반 봉고를 꺼내 가지고 밖에 나와서 구조차량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지사님이나 소방본부장께서는 중앙에 이런 실정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우리가 거동불능자들에게 주는페이징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목에 걸어서 누르면 119에 신고가 되는 게 있는데 이 페이징 개발할 때는 그 직원이 개발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내에 보급된 게 8,484대가 보급됐는데 이것을 누르면 119에 전화가 혼선이 생기고 불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신고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구조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차제에 이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페이징이 이웃에서 15m 떨어지면 또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대당 17만원입니다. 이것도 개선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기이 목에 걸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조금 더 보태면 차라리 휴대폰을 해도 그냥 1번을 표시해 가지고 누르면 되도록 그런 장치를 하든지 해서 이것도 이 차제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전화가 불통되지 않는, 혼선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드리면서 차제에 인원과 차량과 이 페이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학 의원(교육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2003년12월19일 18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2003년12월22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재의 지시로 2004년1월12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자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가 본 조례안에 대해 외교통상부, 농림부, 교육인적자원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안 제2조 2항, 제4조 2항, 제5조 2항의 학교급식 식재료로 국내를 포함한 지역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관계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내국민 대우와 WTO보조금 및 관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의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보조금지급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집행부에 재의 요구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의요구안 처리방법 및 문제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의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조례안은 폐기되며 찬성할 경우에는 집행부로 재이송되고 재의요구 사유를 감안할 때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에 재의요구서에 명시된 관련부처의 의견이 명료하고 행정소송 수행 및 소명자료 확보가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패소할 경우에 도의회의 위상 손상과 3차 발의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안건으로 동 조례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재의요구 사유에 명시된 지역 농·수·축산물 사용을 학교급식에 의무화하는 조항을 우수 농·수·축산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 동료의원님들과 또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로서 본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2003년9월9일 본의원을 비롯한 열 네 분이 발의하여 2003년10월1일 해당상임위 1차 심사 시에 국제통상 마찰을 우려해서 2003년 11월3일 김성하의원 외 1인의 번안동의안으로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학교급식 식재료로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심사의결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후 본인을 비롯한 18분이 우수 농·수·축산물을 지역 농·수·축산물로 수정 재발의 하여 2003년12월4일에 제3차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의결 하고 2003년12월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조례안의 발의 취지는 질 좋은 식재료로 성장기에 있는 도내 38만명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지역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문제가 된 급식 식재료가 우수 농·수·축산물이든 지역 농·수·축산물이든 선택은 본 조례 시행규칙인 시장·군수가 선택할 사항으로 남겨둔다면 시장·군수는 결코 지역농민의 실정을 외면하지는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동시와 칠곡군에서는 이러한 학교급식식재료조례 제정운동을 운동본부가 주축이 되어서 주민청원 형식으로 조례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는 전남은 지역농산물을 우수 농수산물로 표기해서 마찰을 없이 하여 조례를 선포하였고 전북의 경우는 행자부의 재심의 요구상태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소송까지 갈 경우에는 그 시행시기를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군 조례제정에 앞서 본 조례안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토의를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수정 의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본 조례의 효력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만 의원(기획위원회)

먼저 오늘 본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준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사실 오늘 사퇴의 변을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알리려고 도의원 6년 동안에 처음으로 제 손으로 원고를 써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떠나는 마당에는 제 마음을 글로 좀 표현해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16개 시·도지사로서 아마 이의근지사님이 가장 착잡한 심정일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장이었던 안상형시장이 뇌물수수죄로 검찰에 구속되어 급기야 자살을 했습니다. 그 안상형시장이 2002년도 4대 지방선거에 부산·경남의 구심점으로 한나라당의 최선봉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도덕적으로 뇌물수수에 대한 죄 값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상형시장은 한나라당의 후보였고 지금도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부산시장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태들 중에 우리 이의근지사를 열린우리당에서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탈당할 것이다, 총리로 기용할 것이다. 급기야는 이의근지사의 자존심마저 건드리는 비서실장으로 기용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난무할 때 과연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이 지역의 중진 국회의원들이 16개 지사는 물론이고 우리 광역의원들을 향해서 어떠한 보호와 조치를 했습니까?

선거 때만 이용하고 소모품을 써버리는 이러한 한나라당의 모습에 본의원은 너무나 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충정어린 발언들을 남아 계시는 우리 선배·동료의원께서는 마음깊이 새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짧은 소견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희망과 개혁의 기치로 시작한 갑신년 새해도 어느 덧 입춘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춥던 설 명절날 아침 전 국민들의 가슴속에는 새해에는 좀 더 살맛 나고 좀 더 신명나는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치권도 안정되어 민생을 살피고 경기도 회복되어 실업문제도 해결되고 대외적인 국력도 증진되어 미국과도 견줄 수 있고 우리 공산품과 농산물이 세계 곳곳을 누비고 북한 문제도 잘 해결되어 통일의 초석도 마련되는 등 각계각층마다 정말 다양한 소고소언(小故笑言)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17대 총선 정국을 맞이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권의 아귀다툼에 휩싸여 민생은 내팽개치고 산적인 국가 현안들은 길거리에 텅구는 휴지조각처럼 처참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라크의 전장속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매스컴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질 때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은 연일 정치자금 불법모금, 친인척 비리, 금품수수와 불법비자금 등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아비규환의 모습을 연출해 왔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FTA 바람이 불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FTA 타결에 대한 적극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대응책과 자구책 마련은 뒷전이고 오로지 지역 표심을 의식한 선동적이고 가시안적인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영주시민들의 성원과 격려속에서 전국 최연소의 나이로 경상북도의회에 등원하여 지금까지 6년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고락을 같이해 왔습니다. 7대 도의원 신분으로 참가한 한나라당 경북운영위원 선거를 치름으로써 많은 부분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말로만 외치는 상향식 정당정치를 이끌어 내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던 한나라당 경북운영위원 선거를 아직도 선배의원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 본의원은 한나라당이 구태의연하고 태무심한 개혁의 의지와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완강한 저항을 지켜보았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혁신과 상향식에 의한 민주정당 운운은 허울좋은 과다망상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의원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또다시 한나라당에 또 다시 공천신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 대해 과연 개혁과 살을 도려내는 대수술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한나라당 공천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저의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여권의 정치탄압과 압제, 편파적인 여론몰이 속에서 그나마 한나라당이 국민의 정당으로 다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개혁과 전체적인 혁신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금의 한나라당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밀실공작 정치의 추태를 보이고 있으며 겉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심사를 통해 새로운 인물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추진한다고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현역의원 대부분을 단수 공천자로 확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모든 여론이 이런 한나라당 병적인 형태에 대해 여러 가지 확실하고도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자신인 한나라당은 말기 암적인 병폐에 대해 스스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과 의지 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한나라당에 대해 본의원은 어떤 기대와 희망도 버렸습니다. 돌아서는 민심과 침몰해 가는 한나라당에 대해 아무리 고해와 열변을 토해도 그 어떤 개혁의 의지조차도 없는 귀머거리에 불과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인 이문열 씨 조차 ‘씩수가 노랗다’, ‘자폭을 해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노무현 정부는 자신들의 치부와 비리는 안중에도 없고 연일 야권 탄압에만 모든 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과 민생을 책임져야 할 관계 부처의 장·차관 및 자치단체장을 총선용 도구로 모두 내몰아 국정 파탄과 민생파탄이라는 국가존립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아무리 힘없고 정치적인 기반이 미약한 지방의회 의원이지만 차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정들었던 많은 동료의원님들과 끝까지 임기를 하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하게 됨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 암담한 정치현실과 저희 고향인 영주가 더 이상 변두리에 이름이 없는 시골구석 마을로 무시당하는 현실을 두고 볼 수가 없기에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희망과 미래가 없는 한나라당을 떠나 오직 지역과 국가를 위해 백의종군한다는 자세로 다시 한 번 매진하고자 합니다. 당헌, 당규조차 지키지 못하는 한나당의 모습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 할 것인가 하는 물음 앞에서 어느 누가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저는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정들었던 경상북도의회를 떠나지만 선배의원님들과 했던 지난 시간들은 제 일생에 크나큰 행운이었으며,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신 이의근지사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승회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선배의원님들은 아버지 같은 스승이었습니다. ‘인생하처 불상봉’(人生何處不相逢)이라는 옛구절이 아니더라도 늘 마음만은 선배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 : 5건
- 동 의 안 : 1건

□ 조 례 안 : 5건

- 경상북도고문번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양곡가공업등록및신고철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경상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2. 1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인이내”를 “10인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위촉) 도지사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u>5인이내</u>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p>	<p>제2조(위촉) ----- ----- <u>10인이내</u> ---- -----.</p>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2. 1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5,404명(한시정원 10명 포함)” 을 “5,472명(한시정원 10명 포함)” 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5,390명(한시정원 10명 포함)” 을 “5,458명(한시정원 10명 포함)”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경상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5,404명(한시정원 10명 포함)</u>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 <u>5,390명(한시정원 10명 포함)</u> <p>제3조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u>5,472명(한시정원 10명 포함)</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 : <u>5,458명(한시정원 10명 포함)</u> <p>제3조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2. 1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현 행

【별표 1】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지 급 액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 조 활 동 비
교 육 위 원	월 700,000원	월 200,000원

【별표 5】

교육위원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단위 : 미 불화)

구 분	항공임	등 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 장 부의장	1등정액	가	40	186	133	150	180	210
		나	40	135	99			
		다	40	107	72			
		라	40	91	61			
위 원	1등정액	가	35	151	107	140	170	195
		나	35	109	78			
		다	35	84	58			
		라	35	72	49			

개 정 안

【별표 1】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지 급 액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 조 활 동 비
교 육 위 원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별표 5】

교육위원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단위 : 미 불화)

구 분	항공임	등 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 장 부의장	1등정액	가	40	205	133	150	180	210
		나	40	149	99			
		다	40	118	72			
		라	40	100	61			
위 원	1등정액	가	35	166	107	140	170	195
		나	35	120	78			
		다	35	92	58			
		라	35	79	49			

경상북도양곡가공업등록및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2. 1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양곡가공업등록및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상북도양곡가공업등록및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2. 1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내지 제3항” 을 “제3항 내지 4항” 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탕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4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제3항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4에 의한 작업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1인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동법 제23조에 의한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하여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차사업자는 별표 5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동 표의 작업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폐차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업 등록을 한 자는 제7조 제4호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한 폐차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4]

1. 추가해야 할 시설기준

자동차종합정비업자	소형자동차정비업자
○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 잔가스 연소장치 ○ 가스누출 검지기 ○ 소화기	○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 잔가스 연소장치 ○ 가스누출 검지기 ○ 소화기

2. 작업기준

- 가.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없을 시에는 정비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할 것
- 나.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 할 것
- 다.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 주위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 라.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 할 것
- 마. 가스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 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가스 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를 시킨 후 용기부속품을 분해 하거나 떼어낼 것
- 바.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누출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
- 아.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안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

[별표 5]

1. 추가해야 할 시설기준

-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 연소장치
- 가스누출 검지기
- 소화기

※ 기존 조례상의 시설기준에 가스자동차 폐차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기준을 추가한 것임.

2. 작업기준

- 가.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하여 가스자동차의 폐차와 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
- 나. 가스자동차를 폐차하는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 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 다.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 라.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떼어낼 때에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조심스럽게 떼어낼 것
- 마.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에는 내부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설비에 의하여 회수하거나, 잔가스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시킨후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할 것.
- 바.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용기밸브를 열고 가스누출검지기로 내부의 잔가스가 완전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 폐기(절단)할 것.
-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 누출검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제 교통 정책 과	<p>제1~5조(생략)</p> <p>제6조 (정비업의 등록기준)</p> <p>①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설 ></p> <p>② ~ ③</p> <p>제7조 (폐차업의 등록기준)</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설 ></p>		<p>제1~5조(현행과 같음)</p> <p>제6조 (정비업의 등록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 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4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제3항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4에 의한 작업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동법제23조에 의한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하여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 ⑤ (중전 ②~③항)</p> <p>제7조 (폐차업의 등록기준)</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폐차 사업자는 별표 5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동 표의 작업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p>

□ 동 의 원 : 1건

- 2004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4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 1. 27, 경상북도지사
- 나. 회부일자 : 2004. 1. 28
- 다. 상정일자 : 2004. 2. 10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 라. 의결일자 : 2004. 2. 10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설명 : 농수산국장 임 광 원
- 나. 제안이유

2004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을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 중에 있으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 (1) 기금명칭 : 농어촌진흥기금
- (2) 설치근거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2677호)
- (3) 설치목적 : 지역농수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위주의 지원으로 지역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1지역 1명품 육성 및 품질향상 도모
- (4) 설치년도 : 1993년 (2001. 1. 4 전면개정)

나.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말	2004년도운용계획			2004년도말	비고
	현재액(A)	수 입	지 출	증감(B)	현재액(A+B)	
농어촌진흥기금	60,180	24,763	34,097	△9,334	50,846	
농어촌발전기금	58,059	22,497	31,793	△9,296	48,763	금 회 변경분
농수산물유통기금	1,307	1,629	1,703	△ 74	1,233	
1지역1명품육성기금	814	637	601	36	850	

(2) 재원조성 : 출연금, 이자수입, 융자금 상황

- 농어촌발전기금 : 출연금, 이자, 융자상환금
- 농수산물유통기금 : 이자, 융자상환금
- 1지역1명품육성기금 : 이자, 융자상환금

(3) 지원기준

구 분	금리	용 자 기 간	용 자 대 상	용 자 한 도
농 어 촌 발전기금	2.5%	3년거치7년균분상환	· 시설자금	· 개인 1억원
	2.5%	3년거치7년균분상환	· 벤처농업육성자금	·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민 조직, 수출업체 2억원
	2.5%	2년거치3년균분상환	· 수출자금	· 농·수·축협 및 특수 조합 5억원
	3.0%	1년거치2년균분상환	· 운영자금	· RPC 개소당 2~5억원 벼 매입자금 지원 (1.14 농정심의회 의결)
	0%	1년 단기상환	· RPC 벼 매입자금	
농수산물 유통기금	3%	1년거치2년균분상환	· 농수산물직판사업, 산지매취사업, 전통식품개발 및 산지가공사업 등 농수산물유통사업에 필요한 자금	· 업체당 1억원 이내
1지역1명품 육성기금	2%	2년거치3년균분상환	· 1지역1명품단지확대 조성 및 관측홍보사업에 필요한 자금	· 업체당 1억원 이내

(4) 지원대상

○ 농어촌발전기금

농수산업 시설장비현대화사업, 농어촌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 작목육성 및 특산품개발사업, 대체작목개발과 생산시범사업, 품목별 수출협업단지육성 및 농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 산업육성사업, 벤처농업육성사업, 기타 농어촌구조개선에 필요한 사업

○ 농수산물유통기금

농수산물직판사업, 산지매취사업, 전통식품개발 및 산지가공사업 등 농수산물유통사업

○ 1지역1명품육성기금

고유브랜드, 포장디자인 및 용기개발, 품질개선, 시설자동화 및 확충, 가공원료확보, 기술개발 등

4.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내용

가. 자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
수입·지출	84,942,944	56,010,708	28,932,236	51.7

⇒ 기정예산액 560억1천1백만원의 51.7%인 289억3천2백만원이 증액된 849억4천3백만원입니다.

(1) 농어촌발전기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
수입 · 지출	80,555,630	51,623,394	28,932,236	56

(2) 농수산물유통기금 : 변동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
수입 · 지출	2,935,920	2,935,920	-	-

(3) 1지역1명품육성기금 : 변동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
수입 · 지출	1,451,394	1,451,394	-	-

나. 수입계획 총괄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
계	84,942,944	56,010,708	28,932,236	51.7
·전년도 이월금	60,180,431	43,041,195	17,139,236	39.8
·출 연 금	1,500,000	1,500,000	0	-
·용 자 회 수	21,893,613	10,100,613	11,793,000	116.7
- 원 금	20,648,918	8,855,918	11,793,000	133.2
- 이 자	1,244,695	1,244,695	0	-
·적립금 이자	1,368,900	1,368,900	0	-

⇒ 기정예산액 560억1천1백만원의 51.7%인 289억3천2백만원이 증액된 849억4천3백만원으로

- 전년도 이월금 601억8천만원
- 출연금 15억원
- 용자금 회수액 218억9천4백만원
- 적립금 이자 13억6천9백만원이며, 기금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발전기금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
계	80,555,630	51,623,394	28,932,236	56.0
·전년도 이월금	58,059,084	40,919,848	17,139,236	41.9
·출 연 금	1,500,000	1,500,000	0	-
·용 자 회 수	19,641,546	7,848,546	11,793,000	150.3
- 원 금	18,511,388	6,718,388	11,793,000	175.5
- 이 자	1,130,158	1,130,158	0	-
·적립금 이자	1,355,000	1,355,000	0	-

(2) 농수산물유통기금 : 변동없음

(3) 1지역1명품육성기금 : 변동없음

다. 지출계획 총괄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
계	84,942,944	56,010,708	28,932,236	51.7
·물 건 비	4,600	4,600	0	-
·용 자 금	34,093,000	17,300,000	16,793,000	97.1
·다음년도이월금	50,845,344	38,706,108	12,139,236	31.4

⇒ 지출계획은 기정예산액 560억 1천 1백만원의 51.7%인 289억 3천 2백만원이 증액된 849억 4천 3백만원으로

- 물건비 5백만원
- 용자금 340억 9천 3백만원
- 다음년도 이월금 508억 4천 5백만원이며, 기금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발전기금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
계	80,555,630	51,623,394	28,932,236	56.0
·용 자 금	31,793,000	15,000,000	16,793,000	112.0
·다음년도이월금	48,762,630	36,623,394	12,139,236	33.1

(2) 농수산물유통기금 : 변동없음

(3) 1지역1명품육성기금 : 변동없음

5. 검토의견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당초 지원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RPC 벼 구매자금 117억 9천 3백만원과 재해 발생시 지원자금 50억원 등 167억 9천 3백만원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 이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필요한 부문에 기금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 지난해 연말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농정심의회 개최 시기를 앞당기거나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시기를 조정하는등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아울러 금리하락,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금수입은 2002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농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금증식을 위한 대책도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정활동보고서(제185회, 186회 임시회)

2004. 2 인쇄 / 2004. 2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